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상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965

발의년월일 : 2017. 10. 26.

발 의 의 원 : 박상태 의원, 이귀화 의원

조재구 의원, 정 용 의원 이경에 의원, 임인환 의원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 제3조제2항에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기간을 3년 으로 규정하여 법령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보다 최대 2년을 단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재량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업체에게도 부당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제1항과 같이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함(안 제3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제1항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3년으로"를 "5년 이내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되, 양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단축할 수 있다. ③ (생략)	제3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5년 이내로 ③ (현행과 같음)

관계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⑤ 생략